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1. . . (제 회)	

교 원 의 노 동 조 합 설 립 및 운 영
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재갑 (고용노동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퇴직교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(법률 제17861호, 2021.1.5. 공포, 2021.7.6. 시행)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교섭위원 선임 관련 분쟁 해결 절차 세부 규정 마련(안 제3조의2 제6항, 제7항, 제8항, 제9항)

- 1) 조합원 수 확인 관련 관할 기관을 명확화하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조합원 수를 확인할 경우,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수에 대하여 조사·확인할 수 있도록 함
- 2) 교섭노동조합이 서류 제출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결정하도록 함
- 3) 조합원 수 산정은 법 제4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

나.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(안 제4조, 제9조제1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0. 0. ~ 0. 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제6항 전단 중 “기간”을 “기간 내”로, “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”을 “다음 각 호의 관할 구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교섭단이 구성되거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지정하여 조합원 수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.

제3조의2제6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3조제1항제1호의 상대방에게 요구된 교섭의 경우: 고용노동부장관
 2.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상대방에게 요구된 교섭의 경우: 상대방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
- ⑦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6항에 따른

신청을 받은 때에는 모든 교섭노동조합과 상대방에게 통지하고, 조합원 명부(제5항의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의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을 말한다)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수에 대하여 조사·확인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합원 수의 확인을 위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조합원 수를 확인하여 제3조제5항에 따라 공고된 교섭노동조합에 알려야 한다.

⑧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 교섭노동조합이 서류 제출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결정한다.

⑨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조합원 수 산정은 법 제4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법 제6조제4항”을 “법 제6조제8항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전단 중 “교원”을 “교원(법 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“교원”으로”를 ““교원(법 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)”으로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의2(교섭위원의 선임) ① ~ ⑤ (생략) ⑥ 교섭노동조합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에 대하여 이견이 계속되거나 제4항에 따른 기간 에 교섭위원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노동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조합원 수의 확인을 신 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고용노동 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고용노동 관서의 장은 조합원 수의 확인 을 위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조합원 수를 확인하여 제3조제5항에 따라 공고된 교섭 노동조합에 알려야 한다.	제3조의2(교섭위원의 선임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----- ----- ----- ----- 기간 내----- <u>다음 각 호의 관할 구분에 따라</u> <u>고용노동부장관 또는 -----</u> ----- ----- ----- .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<u>제3조제2항에 따라 교섭단이 구</u> <u>성되거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</u> <u>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처리하기</u> <u>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</u> <u>있는 때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</u> <u>를 지정하여 조합원 수를 확인</u> <u>하게 할 수 있다.</u>
<신설>	1. 제3조제1항제1호의 상대방에 게 요구된 교섭의 경우: 고용 노동부장관
<신설>	2.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

<신 설>

<신 설>

의 상대방에게 요구된 교섭의
경우: 상대방 소재지를 관할하
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

⑦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해당
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6
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
모든 교섭노동조합과 상대방에
게 통지하고, 조합원 명부(제5
항의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
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
의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한
조합원을 말한다) 등 필요한 서
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하게
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수
에 대하여 조사·확인할 수 있
다. 이 경우 조합원 수의 확인을
위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그 확
인이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
정이 없으면 신청일부터 10일
이내에 조합원 수를 확인하여
제3조제5항에 따라 공고된 교섭
노동조합에 알려야 한다.

⑧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해당
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6
항 및 제7항에 따라 조합원 수
를 확인하는 경우 교섭노동조합

<신 설>

제4조(국민여론 등 의견수렴) ①
노동관계 당사자는 법 제6조제4
항에 따라 국민여론 및 학부모
의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여론
조사를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
최할 수 있다.

② (생 략)

제9조(다른 시행령과의 관계) ①
교원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
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영에
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
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
제외하고는 「노동조합 및 노동
관계조정법 시행령」에서 정하
는 바에 따른다. 이 경우 같은
영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
중 “고용노동부장관, 특별시장
· 광역시장 · 도지사 · 특별자치

이 서류 제출 등 필요한 조사에
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된
자료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
결정한다.

⑨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조합
원 수 산정은 법 제4조의2제1호
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기준으로
한다.

제4조(국민여론 등 의견수렴) ①
----- 법 제6조제8항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9조(다른 시행령과의 관계) ①
교원(법 제4조의2제2호에 해당
하는 사람을 포함한다)-----

-----.

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(이하 “행정관청”이라 한다)”은 “고용노동부장관”으로, 같은 영 제9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 중 “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”는 각각 “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·도 교육감, 국·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·경영자에게”로, 같은 영 제10조제2항 중 “다른 행정관청의 관할구역”은 “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구역”으로, “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”은 “고용노동부장관”으로, 같은 영 제11조제2항 중 “제1항제3호 및 제4호”는 “제1항제3호”로, “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도”는 “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·도 교육감, 국·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·경영자에게도”로, 같은 영 제29조제1항 중 “노동위원회”는 “중앙노동위원회”로, 같은 영 제30조제1항 중 “중재위원회”는 “교원

노동관계 조정위원회”로 보고,
같은 영 중 “근로자”는 각각
“교원”으로, “사용자”는 각각
“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·
도 교육감, 국·공립학교의 장,
사립학교 설립·경영자 또는 교
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
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·도 교
육감, 국·공립학교의 장, 사립
학교 설립·경영자를 위하여 행
동하는 자”로, “행정관청”은 각
각 “고용노동부장관”으로 본다.

② (생략)

“교원(법 제4조의2제2호에 해당
하는 사람을 포함한다)”으로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	
연 락 처	(044) 202 - 7656